

현장안전담당 지정 (제8조제1항 관련)

1. 현장지휘권을 가진 부서(「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 11조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단 또는 119재난대응단을 말한다)의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현장안전점검관 또는 관할 안전센터 등의 장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2. 2개 이상의 안전센터 등이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현장지휘관(관할 안전센터 등의 장)을 제외한 안전센터 등의 장을 전체 출동대의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3. 안전센터 등에는 현장지휘관과 동일 또는 현장지휘관을 제외하고 가장 계급이 높은 소방공무원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4. 2대 이상의 소방자동차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현장지휘관을 제외하고 가장 계급이 높은 소방공무원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5. 구급차 등 단일 출동대 단위로 편성되고, 현장지휘관도 현장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운용자를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6.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경우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안전담당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단, 소방본부의 현장안전담당은 재난현장의 관할 소방서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